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17

발의연월일: 2021. 2. 26.

발 의 자:황보승희·박성중·박대출

주호영 · 서범수 · 허은아

박대수 · 김예지 · 송석준

정희용 · 유경준 · 김영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는 「방송법」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임원이 수령하는 보수,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이사·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이사 · 임원의 보수
- 2. 이사 · 임원의 각종 수당 내역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이사·임원의 보수 등
	의 공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
	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
	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
	<u>다.</u>
	<u>1. 이사·임원의 보수</u>
	2. 이사·임원의 각종 수당 내
	<u>역</u>
	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사항</u>